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3357호
- 제출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제출일자 : 2025. 10. 20.
- 회부일자 : 2025. 10. 23.

II. 제안이유

-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사무 범위를 정비하고 「평생교육법 시행령」상 평생교육시설 관련 위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평생교육시설 관련 사무에 대한 교육장의 위임 권한(행정처분, 지도·감독 등) 확대(안 제5조제12호)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관련 사무에 대한 권한 위임 사항 정비 및 신설

(안 제5조34호)

IV. 참고사항

1. 관계법규 : 별첨 6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및 제35조(교육장의 분장사무)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3. 협의 :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음

4.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 입법예고(2025.9.18. ~ 2025.9.29.) 결과 : 의견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3357호로 제출되어 202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사무 범위를 정비하고 「평생교육법 시행령」상 평생교육시설 관련 위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먼저 동 개정조례안 제5조제12호는 평생교육시설 관련 사무에 대한 교육장의 위임 권한을 확대하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3항의 평생교육시설 관련 위임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3항¹⁾은 교육감에게 각 호(제1호~제

1)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② 생략

③ 교육감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및 이 영 제24조 후단에 따른 변경보고(「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한정한다)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4.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 통보
5.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6.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7.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8.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9. 법 제3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42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11. 법 제42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12. 제49조제4항(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12호)의 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안 제5조제12호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중 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 확인에 관한 업무(시행령 제1호)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제3호)를 제외한 나머지를 각 목에 규정함으로써 그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 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 및 「평생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소관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 다음으로 안 제5조제34호는 현재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일반고 등학교 컨설팅 장학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공·사립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사무 중 각목에 규정된 사항’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은 권한의 위임은 「교육자치법」 제26조²⁾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하급교육행정기관³⁾ 등에 위임할 수 있고, 이에 서울시교육감은 동 조례

④ 생략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하급교육행정기관은 교육지원청을 의미하며, 동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⁴⁾에서 사무 중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 현재 「교육자치법」 제35조⁵⁾는 교육장에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를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반면 공·사립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호에 따라 조례를 통해 교육장에게 사무를 위임 및 분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교육지원청은 동 조례에서 위임한 사무만이 아닌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관련 업무 중 일부를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법규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 한 상황입니다.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자체 조사 및 각 부서의 의견을 수합·검토하고⁶⁾, 타시도교육청의 사무내용 등을 비교하여 장학, 진로교육(일반고), 학업 중단 예방 사업, 교육복지 관련 사업, 정보화 관련 사업,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운영 지원 사업 등의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무로 분류하였습니다.
- 따라서 안 제5조34호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무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불일치하는 법률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고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 받아 분장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6)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2025.8.).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정비를 위한 부서 검토의견서 제출 요청.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5조제34호 개정과 관련하여 동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문을 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발송하여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밝히고 있으나, 안 제5조의 개정은 본청 및 교육지원청 업무 분장에 큰 변화가 발생 되는 사항인 만큼 입법예고 전에 본청 및 교육 지원청 등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논의와 의견 수렴 및 협의 절차가 선행되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아울러 동 조례안과 같이 교육감의 권한 변동을 수반하는 사항의 경우 단순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담당부서가 자체적으로 사무를 구분하도록 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 있는바, 권한 위임의 범위와 사무 구분이 보다 공감을 얻고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심의 절차나 검토 단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이가영(2180-8270)
----------	----------------	-------	----------------

관 계 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자치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43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해당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2호, 2025. 10. 1., 일부개정]

제7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삭제 <2014. 6. 30.>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3. 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4. 법 제25조 및 이 영 제21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접수 및 지정서 교부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 설치한 평생교육시설의 현황 관리

③ 교육감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4. 6. 30., 2024. 4. 16.>

1. 법 제2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및 이 영 제24조 후단에 따른 변

경보고(「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한정한다)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4.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 통보
5.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6.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7.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8.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9. 법 제3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42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11. 법 제42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12. 제49조제4항(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④ 교육부장관은 진흥원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